

大韓民國憲法改正案

한국

大韓民國憲法改正案

提案年月日：1987. 9. 18

提 案 者：民主正義黨 李大淳議員
統一民主黨 金鉉圭議員
新韓民主黨 鄭在原議員
한국국민당 梁正圭議員
外 260人

提 案 理 由

우리는 1948年7月17日 大韓民國政府樹立의 기초가 된
憲法을 制定·公布한 이래 8次에 걸친 憲法改正을 경험하
였다.

이제 第 12 代 國 會 的 與 · 野 議 員 은 지난 39 年 間 겪은 귀중
한 憲政史 的 教訓 을 거울삼고 우리 國 民 的 創 意 와 勸 勉
으로 이룩한 經 濟 成 長 과 더불어 꾸준히 變 化 。
成熟되어 온 民 主 力 量 과 多 樣 化 된 民 意 를 폭넓게 受 容
하여 大 韓 民 國 憲政史 的 새로운 章 을 여는 合 意 改 憲 案 을
提 案 함 으로써, 國 民 모두의 同 意 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自由民主主義 理念 과 體 制 를 더욱 확고히 계승 · 발전시키고
祖 國 的 平 和 統 一 基 盤 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雄 飛 하는 2 千
年 代 의 새 歷 史 創 造 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第12代 總選 이후 우리 社會는 改憲問題를 둘러싸고 葛藤과 對立 그리고 混亂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國民大和合을 이룩하여 우라 歷史上 처음으로 與·野 合意에 의하여 大統領直選制의 憲法改正案을 提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憲法改正案은 與·野 政黨間에 合意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國會 내의 모든 交涉團體代表등이 참여한 憲法改正特別委員會에서 滿場一致로 起草·成案한 것을 그대로 提案하는 등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데 필요한 모든 節次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民主化 時代의 展開를 향한 國民的 輿望과 政治人の 時代的 使命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憲法改正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大統領直選制의 採擇으로 國民의 直接選舉에 의한 政府選擇을 보장함과 아울러, 大統領單任制에 기한 平和的 政權交替의 傳統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民主國家發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둘째, 大統領의 非常措置權·國會解散權의 폐지를 통하여 大統領의 權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國政監查權을 부활하는 등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의 權限을 강화하여

그 機能을 활성화함으로써 國家權力의 균형과 調和를 도모하였으며, 法官의 任命節次 개선과 憲法裁判所의 新設등을 통하여 司法權의 獨立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憲法의 實效性을 提高하였다.

세째, 拘束適否審查請求權의 전면보장, 刑事補償制度의 확대, 犯罪被害者에 대한 國家救助制 新設등 國民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言論·出版·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檢閱의 금지등 表現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여, 勞動3權의 실질적 보장과 最低賃金制의 실시등 勤勞者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확충하여 基本的人權을 대폭伸張하였다.

네째, 經濟秩序에 관하여는 自由經濟體制의 原理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所得의 分配, 地域經濟의 균형발전, 中小企業과 農·漁民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의 福利를 증진시키고, 國民生活의 기본적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主要骨子

1.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의 계승 및 祖國의 民主改革의 使命을 명시함(案前文).

2. 在外國民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規定함 (案第 2 條第 2 項).
3. 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규정을 新設함 (案第 4 條).
4.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 遵守를 명시함 (案第 5 條第 2 項).
5. 政黨은 組織·活動 외에 그 目的도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政黨의 解散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따르도록 함 (案第 8 條第 2 項 및 第 4 項).
6.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逮捕·拘束·押收·搜索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도록 함 (案第 12 條第 1 項 및 第 3 項).
7. 逮捕·拘束時 그 이유와 辯護人の 助力を 받을 權利를告知할 義務 및 家族등에게 그 이유·日時·場所를 통지할 義務規定을 新設함 (案第 12 條第 5 項).
8. 모든 拘束者에 대하여 拘束適否審查請求가 가능하도록 함 (案第 12 條第 6 項).
9.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의 禁止 및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禁止 規定을 新設함 (案第 21 條第 2 項).

10.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保障에 필요한 사항을
法律로 정하도록 함 (案第 21 條第 3 項).
11. 科學技術者의 權利를 法律로써 보호하도록 함 (案第 22 條第
2 項).
12. 財產權의 收用등에 대하여 法律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補
償을 支給하도록 함 (案第 23 條第 3 項).
13. 軍事施設에 관한 罪를 범한 民間人에 대하여는 軍事法院의
裁判管轄에서 제외함 (案第 27 條第 2 項).
14. 刑事被害者は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
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도록 함 (案第 27 條第 5 項).
15. 刑事被疑者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
을 받은 경우에도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刑事補償制度를
확대함 (案第 28 條).
16.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被害를 받은 國民
에 대한 國家救助制度를 新設함 (案第 30 條).
17. 大學의 自律性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함 (案第
31 條第 4 項).
18. 勤勞者の 最低賃金制를 실시하도록 함 (案第 32 條第 1 項).
19. 女子의 勤勞는 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
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案第 32
條第 4 項)

20. 團體行動權 행사의 法律留保條項을 削除하고,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案第 33 條第 1 項 및 第 3 項)
21.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向上을 위하여 努力하도록 하고, 老人과 青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實施할義務 및 災害豫防努力義務를 國家에 賦課함(案第 34 條第 3 項·第 4 項 및 第 6 項).
22. 環境權 規定에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住宅開發政策의 實시를 추가하여 規定함(案第 35 條第 3 項).
23. 婚姻·家族·健康에 關한 權利에 母性保護 規定을 추가함(案第 36 條第 2 項).
24. 國會臨時會 召集要件을 “在籍議員 3 分의 1 이상”에서 “在籍議員 4 分의 1 이상”으로 緩和하고, 定期會 會期를 “90 日”에서 “100 日”로 연장하였으며, 年間開會日數 制限 規定을 削除하고, 大統領이 요구한 臨時會에서의 處理案件 制限規定을 削除함(案第 47 條).
25. 國會는 國政을 監查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查할 수 있도록 國政監查權을 復活하고 國政監查 및 調查에 關한 節次는 法律로 정하도록 함(案第 61 條).

26. 國會의 國務總理·國務委員에 대한 解任議決權을 解任建議權으로 變更함 (案第 63 條).
27.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하도록 하고,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경우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當選者를 決定하도록 하며, 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選舉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 得票하여야 當選되도록 함 (案第 67 條第 1 項·第 2 項 및 第 3 項).
28. 大統領의 被選舉權이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 歲에 達한 者로 함 (案第 67 條第 4 項).
29. 大統領의 後任者選舉는 任期滿了 70 日 내지 40 日 전에 하되,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60 日 이내에 하도록 함 (案第 68 條).
30. 大統領의 任期를 5 年 單任으로 함 (案第 70 條).
31. 大統領의 非常措置權을 削除하고,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權과 緊急命令權을 大統領에게 부여함 (案第 76 條).
32.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削除함 (現行第 57 條).
33. 大統領의 權限調整에 따라 國務會議의 審議事項을 變更함 (案第 89 條).

34 . “ 國政諮詢會議 ” 는 “ 國家元老諮詢會議 ” 로 , “ 平和統一政策諮詢會議 ” 는 “ 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 ” 로 名稱을 變更함 (案第 90 條 및 第 92 條).

35 . 大統領의 諮問機關으로 國民經濟諮詢會議를 新設함 (案第 93 條).

36 . “ 大法院判事 ” 를 “ 大法官 ” 으로 하고,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함 (案第 102 條第 2 項 및 第 104 條第 2 項).

37 . 一般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하도록 함 (案第 104 條第 3 項).

38 . 大法院長의 任期는 6 年 單任으로 하며, 大法官의 任期는 6 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도록 함 (案第 105 條第 1 項 및 第 2 項).

39 . 法官은 彙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 (案第 106 條第 1 項).

40 . “ 軍法會議 ” 를 “ 軍事法院 ” 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의 單審制에 있어서 死刑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함 (案第 110 條).

41 . 憲法委員會를 폐지하고, 憲法裁判所를 新設하여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彙劾의 審判, 政黨의 解散審判 및 國家機關相互間等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과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管掌하도록 함 (案第 111 條第 1 項).

42.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지 9人の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大統領이 任命하되, 9人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하고 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任命하도록 함 (案第 111 條第 2 項·第 3 項 및 第 4 項).
43.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수 있도록 하며, 政黨加入을 禁止하고, 彙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함 (案第 112 條).
44.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 彙劾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함에는 6人 이상의 贊成을 요하도록 함 (案第 113 條第 1 項).
45.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의 任期를 現行 5年에서 6年으로 연장하고, 彙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 없이는 罷免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함 (案第 114 條第 3 項·第 5 項 및 第 6 項).
46.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分配를 유지하고, 市場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여,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도록 함 (案第 119 條第 2 項).
47.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를 금지함 (案第 121 條第 1 項).

48. 農業生產性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案第 121 條第 2 項).
49. 國土는 國民 모두의 生產 및 生活의 基盤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 (案第 122 條).
50. 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 綜合開發과 그 지원등에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도록 함 (案第 123 條第 1 項).
51. 國家의 균형있는 地域經濟育成義務를 新設함 (案第 123 條第 2 項).
52. 國家는 農水產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하도록 함 (案第 123 條第 4 項).
53. 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의 自律的活動과 발전을 보장함 (案第 123 條第 5 項).
54.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도록 함 (案第 127 條第 1 項).

55. 이 憲法의 施行日을 1988年2月25日로 하고, 이 憲法施行에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전에 할 수 있도록 함(案附則 第1條).
56.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 日 40日 전 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함(案附則 第2條).
57.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舉후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하도록 하고,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 任期는 최초의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함(案附則 第3條)
58. 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보고,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变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그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하고,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が 아닌 法官은 이 憲法

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任命된 것으로 보며, 이 憲法중 公務
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
부터 適用하도록 함(案附則 第4條)

59.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
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を 지속함(案附則 第5條)

60.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
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새로운 機關이 設置
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하도록 함(案附則
第6條)

大韓民國憲法改正案

大韓民國憲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各人の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を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月日

공연
HAPPY

第 1 章 總 約

第 1 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
부터 나온다.

第 2 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 3 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 4 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 5 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 6 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を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
位가 보장된다.

第 7 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
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 8 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 9 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賀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 10 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search을 할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を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を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치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查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 被告人の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の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 13 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遷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產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 14 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 15 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 16 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 17 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第 18 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第 19 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 20 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 21 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是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2 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 23 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限

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產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 24 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

第 25 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 26 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查할 義務를 진다.

第 27 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 刑事被害者は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 28 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 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 29 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 軍人 · 軍務員 · 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 · 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 30 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 · 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 31 條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教育의 自主性 · 專門性 · 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32 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 · 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特別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 · 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特別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 · 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 33 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 團結權 ·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 ·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 34 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 ②國家는 社會保障 ·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國家는 老人과 青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 ⑤身體障礙者 및 疾病 · 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第 35 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36 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 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 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 37 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 ·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 38 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義務를 진다.

第 39 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 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 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 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團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 47 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 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 在籍議員 4 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 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 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 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 48 條 國會는 議長 1 人과 副議長 2 人을 選出한다.

第 49 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 50 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51 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 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2 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 53 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

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 1 項의 期間
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
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附하고, 在
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 分의 2 이상의 賛成
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
정된다.

⑤大統領이 第 1 項의 期間 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
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 4 項과 第 5 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
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 5 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 4 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
된 후 5 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 日
을 경과함으로써 效力を 발생한다.

第 54 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開始 30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開始될 때까지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豫備費의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豫算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 59 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 60 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中
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
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
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
의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
다.

第 61 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查하거나 特定한 國政事案에 대
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
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查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62 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
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
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 63 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

에게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查하여,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監查院長·監查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賛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彌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賛성이 있어야 한다.

③彌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彌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彌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統領

第 66 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 67 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 1 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 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 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總數의 3 分의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 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68 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

日 내지 40 日 전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壓失한 때에는 60 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第 69 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賀達
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염속히 宣誓합니다.”

第 70 條 大統領의 任期는 5 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 71 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 72 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
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 73 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 74 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 75 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 76 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を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력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 1 項과 第 2 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 3 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を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疾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を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 3 項과 第 4 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 77 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 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措置를 할 수 있다.

④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
하여야 한다.

⑤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 78 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 79 條 ①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豅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 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豅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80 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紘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 81 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 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 82 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

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 83 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 84 條 大統領은 内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 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 85 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 2 節 行 政 府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 86 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여,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 87 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여,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 2 款 國務會議

第 88 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 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 · 國務總理와 15 人 이상 30 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 89 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 · 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 · 國民投票案 · 條約案 · 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 · 決算 · 國有財產處分의 基本計劃 ·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 ·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豅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查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

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 90 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詢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
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詢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1 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

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 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2 條 ① 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② 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
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3 條 ①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
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② 國民經濟諮詢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款 行政各部

第 94 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
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 95 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 96 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 4 款 監查院

第 97 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查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查院을 둔다.

第 98 條 ①監查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查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
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查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
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 99 條 監查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查하여 大
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 100 條 監查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查委員의 資格·監查對
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5 章 法 院

第 101 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 102 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들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 103 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 104 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
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
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 105 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 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 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 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 106 條 ①法官은 彙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
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 107 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查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 108 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109 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10 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 111 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彙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の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 2 項의 裁判官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
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 112 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役免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龍免되지 아니한다.

第 113 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役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7 章 選舉管理

第 114 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の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役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龍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選舉管理 · 國民

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内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115 條 ①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 등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 116 條 ①選舉運動은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 117 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產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 118 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 119 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 120 條 ①礦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產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 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 121 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產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 122 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產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效率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 123 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產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自律的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 124 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產品의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 125 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 126 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 127 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
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 1 項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
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 10 章 憲法改正

第 128 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 129 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 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 130 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 日 이
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 分의
2 이상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舉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賛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2月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が 아닌 法官은 第1項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を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공백

憲法改正案對比表

한국

憲法改正案對比表

現 行 憲 法	改 正 案
前 文	前 文
<p>悠久한 民族史, 빛나는 文化, 그리고 平和愛護의 傳統을 자랑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第5民主共和國의 출발에 즈음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고,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각人の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を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p>	<p>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각人の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を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 共榮에 이바지 합으로써 우리 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 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 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 日에 制定되고 1960年6月15 日, 1962年12月26日과 1972 年12月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 한다.</p>	<p>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 共榮에 이바지 합으로써 우리 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 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 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p>
<p>1980年10月25日</p>	<p>1987年 月 日</p>
<p>第1章 總 綱</p> <p>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 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 부터 나온다.</p>	<p>第1章 總 綱</p> <p>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 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 부터 나온다.</p>
<p>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의</p>	<p>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要件은 法律로 정한다.</p> <p>②在外國民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p>	<p>要件은 法律로 정한다.</p> <p>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p>
<p>第 3 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新設)</p>	<p>第 3 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p>
<p>第 4 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p> <p>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한다.</p>	<p>第 4 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推進한다.</p>
<p>第 5 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p>	<p>第 5 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p> <p>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遵守된다.</p>
<p>第 6 條 ①憲法에 의하여 締結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같은 效力を 가진다.</p> <p>②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地位를 보장한다.</p>	<p>같은 效력을 가진다.</p> <p>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地位가 보장된다.</p>
<p>第 6 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p> <p>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	<p>第 7 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p> <p>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
<p>第 7 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p> <p>②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想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p> <p>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p>	<p>第 8 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p> <p>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活動이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想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p> <p>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의 運</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p> <p>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u>憲法委員會</u>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p>	<p>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p> <p>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u>憲法裁判所</u>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p>
<p><u>第 8 條</u>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u>第 9 條</u>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p>	<p>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p>
<p><u>第 9 條</u>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지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p>	<p><u>第 10 條</u>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지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u>第 10 條</u>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 · 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 · 經濟的 · 社會 的 ·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 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 니한다.</p> <p>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p> <p>③ 獄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 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p>	<p><u>第 11 條</u> ①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 · 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 · 經濟的 · 社會 的 ·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 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 니한다.</p> <p>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p> <p>③ 獄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 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p>
<p><u>第 11 條</u> ① 모든 國民은 身體 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 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逮捕 · <u>拘禁</u> · 押收 · 搜索 · 審問 · 處罰과 保安處分을 받 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p>	<p><u>第 12 條</u> ① 모든 國民은 身體 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 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逮捕 · <u>拘束</u> · 押收 · 搜索 또 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 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의하지 아니하고는 強制勞役 을 당하지 아니한다.	아니하고는 處罰 · 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 · 拘禁 · 押收 · 搜索에는 <u>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u> 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인 경우와 長期 3年 以上的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 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 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③ 逮捕 · 拘束 ·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 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 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인 경우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 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逮捕 · 拘禁을 당 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の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u>法律이 정하는 경우에</u> <u>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u> 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の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u>刑事被告人이 스스로</u> <u>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u> <u>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u>

現 行 憲 法	改 正 案
國家가 辯護人을 불인다.	國家가 辩護人을 불인다.
<u>⑤ 누구든지 逮捕 · 拘禁을 당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適否의 審查를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u>	<u>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助力を 받을權利가 있음을 告知 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 · 場所가 지체없이通知되어야 한다.</u>
<u>⑥ 被告人の 自白이 拷問 · 暴行 · 脅迫 · 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の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製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u>	<u>⑥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查를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u>
	<u>⑦ 被告人の 自白이 拷問 · 暴行 · 脅迫 · 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の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u>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p><u>第 12 條</u> ①모든 國民은 行爲 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 지 아니한다.</p> <p>②모든 國民은 遷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u>제한</u> 또는 財產權의 剝奪을 받지 아니 한다.</p> <p>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爲 가 아닌 親族의 行爲로 인 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p>	<p><u>第 13 條</u> ①모든 國民은 行爲 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 지 아니한다.</p> <p>②모든 國民은 遷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u>제한을 받</u> 거나 財產權을 剝奪당하지 아 니한다.</p> <p>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行爲 가 아닌 親族의 行爲로 인 하여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p>
<u>第 13 條</u> 모든 國民은 居住 · 移 轉의 自由를 가진다.	<u>第 14 條</u> 모든 國民은 居住 · 移 轉의 自由를 가진다.
<u>第 14 條</u>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 의 自由를 가진다.	<u>第 15 條</u>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 의 自由를 가진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u>第 15 條</u>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u>搜索에</u> 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 하여야 한다.</p>	<p><u>第 16 條</u>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u>search을 할때에</u> 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 하여야 한다.</p>
<p><u>第 16 條</u> 모든 國民은 私生活 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p>	<p><u>第 17 條</u> 모든 國民은 私生活 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p>
<p><u>第 17 條</u>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p>	<p><u>第 18 條</u>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p>
<p><u>第 18 條</u>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p>	<p><u>第 19 條</u>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p>
<p><u>第 19 條</u> ①모든 國民은 宗教 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p>	<p><u>第 20 條</u> ①모든 國民은 宗教 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p>
<p><u>第 20 條</u> ①모든 國民은 言論· 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p>	<p><u>第 21 條</u> ①모든 國民은 言論· 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 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 의 名譽나 權利를 侵害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p>	<p>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是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 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第 21 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 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p>	<p>第 22 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 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 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 써 보호한다.</p>
<p>第 22 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 權은 보장된다. 그 内容과</p>	<p>第 23 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 權은 보장된다. 그 内容과</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限界는 法律로 정한다.</p> <p>②財產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使用 또는 <u>制限은</u> 法律로써 하되,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補償은 公益 및 關係者의 利益을 정당하게衡量하여 法律로 정한다.</p>	<p>限界는 法律로 정한다.</p> <p>②財產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使用 또는 <u>制限 및</u>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p>
<p><u>第 23 條</u> 모든 國民은 20 歲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p>	<p><u>第 24 條</u>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p>
<p><u>第 24 條</u>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p>	<p><u>第 25 條</u>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p>
<p><u>第 25 條</u>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p> <p>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查할 義務를 진다.</p>	<p><u>第 26 條</u>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p> <p>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查할 義務를 진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u>第 26 條</u>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 · 哨兵 · 哨所 · 有害飲食物供給 · 捕虜 · 軍用物 · 軍事施設에 관 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와 , 非常戒嚴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 하여 非常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會議의 裁判 을 받지 아니한다.</p> <p>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 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 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p>	<p><u>第 27 條</u>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 · 哨兵 · 哨所 · 有毒飲食物供給 · 捕虜 · 軍用物에 관한 罪中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 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 지 아니한다.</p> <p>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 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 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p> <p>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p>	<p>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p>
<p><u>第 27 條 刑事被告人으로서 拘 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u></p>	<p><u>⑤ 刑事被害者は 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 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u></p>
<p><u>第 28 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 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 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u></p>	<p><u>第 28 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 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 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u></p>
<p><u>第 29 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 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 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 니한다.</u></p>	<p><u>第 29 條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 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 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 니한다.</u></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u>法律로</u>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等 職務執行에 관련 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 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 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p> <p>(新設)</p>	<p>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u>法律이</u>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等 職務執行에 관련 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外에 國 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 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p>
<p>第 29 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p>	<p>第 30 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 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p>
<p>第 31 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④教育의 自主性 · 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	<p>④教育의 自主性 · 專門性 · 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p>
<p>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p>	<p>⑤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p>
<p>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運營,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⑥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運營,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u>第 30 條</u>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 · 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 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p>	<p><u>第 32 條</u>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 · 經濟的 方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 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p>
<p>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p>	<p>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 主義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 한다.</p> <p>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p> <p>④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 별한 보호를 받는다.</p>	<p>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 主義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 한다.</p> <p>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p> <p>④女子의 勤勞는 特別한 보 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p>
<p>⑤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 으로 勤勞의 機會를 賦與받 는다.</p>	<p>⑤年少者の 勤勞는 特別한 보호를 받는다.</p> <p>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 으로 勤勞의 機會를 賦與받 는다.</p>
<p>第 31 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 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 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p>	<p>第 33 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 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 動權을 가진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 ·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p> <p>③國家 · 地方自治團體 · 國公營企業體 · 防衛產業體 · 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 ·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p> <p>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產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第 32 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p> <p>②國家는 社會保障 ·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p>	<p>第 34 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p> <p>②國家는 社會保障 ·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진다.	진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國家의 보호를 받는다.</u>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 益의 향상을 노력하여야 한 다. ④國家는 老人과 青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實施할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事由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危險으로부터 國民을 보 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第 33 條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 진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 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 다.</p>	<p>第 35 條 ①모든 國民은 健康하 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 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 하여야 한다. ②<u>環境權의 内容과 行使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u> ③<u>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第 34 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 을 기초로 成立되고 <u>維持되</u> 어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 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p>	<p>第 36 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 을 기초로 成立되고 <u>維持되</u> 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 장한다. ②<u>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u>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 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u></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u>第 35 條</u>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 는 憲法에 列舉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 는 國家安全保障 · 秩序維持 또는 公供福利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 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u>第 37 條</u>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 는 憲法에 列舉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 는 國家安全保障 ·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限하여 法律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 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u>第 36 條</u>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u>第 38 條</u>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u>第 37 條</u>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履行 으로 不利益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u>第 39 條</u>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履行 으로 <u>인하여</u> 不利益한 處遇 를 받지 아니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u>第 4 章 國 會</u>	<u>第 3 章 國 會</u>
<u>第 76 條</u>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 다.	<u>第 40 條</u>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 다.
<u>第 77 條</u>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 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u>議員으로</u>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 하되, 200 人 以上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 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事項 은 法律로 정한다.	<u>第 41 條</u>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 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u>國會議員으로</u> 構成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 하되, 200 人 以上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 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事項 은 法律로 정한다.
<u>第 78 條</u> 國會議員의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u>第 42 條</u> 國會議員의 任期는 4 年으로 한다.
<u>第 79 條</u>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 하는 職을 兼할 수 없다.	<u>第 43 條</u>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 하는 職을 兼할 수 없다.
<u>第 80 條</u>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u>拘禁되지</u>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u>拘禁된</u> 때에는 現行犯人	<u>第 44 條</u>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u>拘禁되지</u>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u>拘禁된</u> 때에는 現行犯人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이 아닌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이 아닌限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u>第 81 條</u>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 지 아니한다.	<u>第 45 條</u>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u>第 82 條</u>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優先 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 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 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 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 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u>第 46 條</u> ①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interest을 優 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 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 분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 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 을 알선할 수 없다.
<u>第 83 條</u>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	<u>第 47 條</u>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年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

現 行 憲 法	改 正 案
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u>3分의 1</u> 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u>4分의 1</u> 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u>90日을</u> ,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u>100日을</u> ,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 <u>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u>	
⑤ <u>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會된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處理하며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u>	

現 行 憲 法	改 正 案
<u>第 84 條</u>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u>選舉한다.</u>	<u>第 48 條</u>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u>選出한다.</u>
<u>第 85 條</u> 國會는 憲法 또는 法 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 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成 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u>第 49 條</u> 國會는 憲法 또는 法 律에 特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 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成 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u>第 86 條</u>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 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 數의 賛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 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u>第 50 條</u>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 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 數의 賛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 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u>第 87 條</u>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 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u>第 51 條</u> 國會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 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任期가 <u>滿了되거나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例外로 한다.</u></p>	<p>任期가 <u>滿了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u></p>
<p><u>第 88 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u></p>	<p><u>第 52 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u></p>
<p><u>第 89 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u></p> <p>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 1 項의 期間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p> <p>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p> <p>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p> <p>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으로 前</p>	<p><u>第 53 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u></p> <p>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 1 項의 期間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p> <p>國會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p> <p>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p> <p>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으로 前</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p> <p>⑤大統領이 第 1 項의 期間內 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 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p> <p>⑥大統領은 第 4 項과 第 5 項 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p> <p>第 5 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 定된 後 또는 第 4 項에 의 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 된 後 5 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 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p> <p>⑦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 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 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を 발생한다.</p>	<p>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p> <p>⑤大統領이 第 1 項의 期間內 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 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p> <p>⑥大統領은 第 4 項과 第 5 項 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p> <p>第 5 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 定된 後 또는 第 4 項에 의 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 된 後 5 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 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p> <p>⑦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 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 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を 발생한다.</p>
第 90 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	第 54 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
4	10

現 行 憲 法	改 正 案
案을 審議·確定한다.	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 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 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 日前까지 國會에 提出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 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계속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運營 2. 法律上 支出義務의 履行 3. 이미 豫算으로 承認된 事業의 계속
第 91 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第 55 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u>第 92 條</u>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p>	<p><u>第 56 條</u>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할 수 있다.</p>
<p><u>第 93 條</u>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p>	<p><u>第 57 條</u>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p>
<p><u>第 94 條</u> 國債를 모집하거나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p>	<p><u>第 58 條</u> 國債를 모집하거나豫算外에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얻어야 한다.</p> <p><u>第 95 條</u>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p> <p>第 96 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와 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 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 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 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權을 가진다.</p> <p>②<u>宣戰布告</u>,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 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國會는 同意權을 가진다.</p>	<p>얻어야 한다.</p> <p><u>第 59 條</u>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p> <p>第 60 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와 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organization에 관한 條 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 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 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權을 가진다.</p> <p>②<u>國會는 宣戰布告</u>, 國軍의 外國에 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 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p>
<p><u>第 97 條</u> 國會는 <u>特定한 國政事</u> <u>案에</u> 관하여 調查할 수 있으 며, 그에 직접 관련된 書類의</p>	<p><u>第 61 條</u> ①<u>國會는 國政을 監查</u> <u>하거나</u> <u>特定한 國政事案에</u> 대하여 調查할 수 있으며</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提出, 證人の 출석과 證言이 나 의견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u> 다만, 裁判과 進行中인 犯罪搜查 · 訴追에</u> 임 접할 수 없다.</p>	<p>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證人の 出席과 證言이나 意 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 다.</p> <p><u>②國政監查 및 調査에 관한</u> <u>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u> <u>法律로 정한다.</u></p>
<p><u>第 98 條</u> ①國務總理 ·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 狀況을 보고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p> <p>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 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 ·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 · 答변하여야 하며, 國務 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 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 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 금 출석 · 答변하게 할 수</p>	<p><u>第 62 條</u> ①國務總理 ·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 狀況을 보고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p> <p>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 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 ·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 · 答변하여야 하며, 國務 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 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 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 금 출석 · 答변하게 할 수</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 있다.</p> <p><u>第 99 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은 國會가 任命同意를 한 後 1年 以內에는 할 수 없다.</u></p> <p>②第 1 項의 解任議決은 國會在籍議員 3 分의 1 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過半數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p> <p>③第 2 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당해 國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國務總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p>	<p> 있다.</p> <p><u>第 63 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u></p> <p>②第 1 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 分의 1 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過半數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u>第 100 條</u> ①國會는 法律에 저 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内部規律에 관한 規 則을 制定할 수 있다.</p> <p>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 查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p> <p>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 籍議員 3 分의 2 以上의 贊 成이 있어야 한다.</p> <p>④第 2 項과 第 3 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p>	<p><u>第 64 條</u>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議事와 内部規律에 관한 規 則을 制定할 수 있다.</p> <p>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 查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p> <p>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 籍議員 3 分의 2 以上의 贊 成이 있어야 한다.</p> <p>④第 2 項과 第 3 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p>
<p><u>第 101 條</u> ①大統領 · 國務總理 · 國務委員 · 行政各部의 長 · <u>憲 法委員會委員 · 法官 · 中央選舉 管理委員會委員 · 監查委員</u> 기 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 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p>	<p><u>第 65 條</u> ①大統領 · 國務總理 · 國務委員 · 行政各部의 長 · <u>憲 法裁判所 裁判官 · 法官 · 中央 選舉管理委員會 委員 · 監查院 長 · 監查委員</u>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 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彰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以上的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大統領에 대한 彰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的 贊成이 있어야 한다.</p> <p>③彰劾訴追의 議決을 받은者는 <u>彰劾決定이</u>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p> <p>④彰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p>	<p>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彰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以上的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大統領에 대한 彰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以上的 贊成이 있어야 한다.</p> <p>③彰劾訴追의 議決을 받은者는 <u>彰劾審判이</u>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p> <p>④彰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u>第 3 章 政 府</u>	<u>第 4 章 政 府</u>
第 1 節 大統領	第 1 節 大統領
<u>第 38 條</u>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u>第 66 條</u>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u>第 39 條</u> ①大統領은 大統領選舉人團에서 無記名投票로 選舉한다.	<u>第 67 條</u>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大統領에 立候補하려는 者는 政黨의 推薦 또는 法律이 정하는 數의 大統領選舉人の 推薦을 받아야 한다.	②第 1 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 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③大統領選舉人團에서 在籍大統領選舉人 過半數의 賛成을 얻은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얻은者를 當選者로 한다.
④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3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總數의 3分의 1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④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現在 40歲에 达하여야 한다.
第40條 ①大統領選舉人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大統領選舉人으로 構成한다.	⑤大統領의 選舉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大統領選舉人の 數는 法律로 정하되, 5,000人以上으로 한다.	(削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③大統領選舉人の選舉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削除)
第41條 ①大統領選舉人으로 選 出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 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現在 30 歲에 達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과 公務員은 大 統領選舉人이 될 수 없다.	(削除)
②大統領選舉人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選舉人은 政黨에 소속 할 수 있다.	
④大統領選舉人은 選舉人이 된 後 처음 實施되는 國會議員의 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으로 選出될 수 없다.	
⑤大統領選舉人은 당해 大統領 選舉人團의 選舉한 大統領의 任期開始日까지 그 身分을 가 진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第 42 條 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現在 繼속하여 5 年 以上 國內에 居住하고 40 歲에 達하여야 한다.</p> <p>이 경우에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期間은 國內 居住期間으로 본다.</p>	(削除)
<p>第 43 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人團은 늦어도 任期滿了 30 日前에後任者를 選舉한다.</p> <p>②大統領이 躄位된 때에는 새로이 大統領選舉人團을 構成하여 3 月以內에 後任者를 選舉한다.</p>	<p>第 68 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 日 내지 40 日 前에 後任者를 選舉한다.</p> <p>②大統領이 躄位된 때 또는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判決 기타의 事由로 그 資格을喪失한 때에는 60 日 以内에 後任者를 選舉한다.</p>
<p>第 44 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p> <p>“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民民族文化의 발전</p>	<p>第 69 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p> <p>“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 및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에 노력하고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p>	<p>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창달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p>
<p>第 45 條 大統領의 任期는 7年 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p>	<p>第 70 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 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p>
<p>第 46 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에 정한 國務委員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p>	<p>第 71 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p>
<p>第 47 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p>	<p>第 72 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p>
<p>第 48 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p>	<p>第 73 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u>第 49 條</u>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 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 로 정한다.	<u>第 74 條</u>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 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 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 로 정한다.
<u>第 50 條</u>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 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받 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u>第 75 條</u>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 體的으로 範圍를 정하여 委任 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
<u>第 51 條</u> ①大統領은 天災 · 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 · 經濟上의 危機에 處하거나, 國家의 安全 을 威脅하는 交戰狀態나 그에 準하는 중대한 非常事態에 處 하여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급속한 措置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할 때에는 內政 · 外 交 · 國防 · 經濟 · 財政 · 司法 등 國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非常 措置를 할 수 있다.	<u>第 76 條</u> ①大統領은 內憂 · 外患 · 天災 · 地變 또는 중대한 財 政 · 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 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에 限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 · 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を 가지는 命令을 發할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 1 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を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第 1 項과 第 2 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 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措置는 效力を 褒失한다.	③大統領은 第 1 項과 第 2 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第 1 項과 第 2 項의 措置는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最短期間內에 限定되어야 하고, 그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第 3 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 부터 效力を 褒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を 회복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⑤大統領은 第 3 項과 第 4 項의

現 行 憲 法	改 正 案
贊成으로 非常措置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事由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u>第 52 條</u> ①大統領은 戰時 ·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 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 事上의 菲요에 응하거나 公共 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 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 · 出版 · 集會 · 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 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	<u>第 77 條</u> ①大統領은 戰時 ·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 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 事上의 菲요에 응하거나 公共 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 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 · 出版 · 集會 · 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 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 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 除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要求 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 除하여야 한다.
<u>第 53 條</u>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 員을 <u>任命한다.</u>	<u>第 78 條</u>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 員을 <u>任免한다.</u>
第 54 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故免·減刑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權에 관한 事 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79 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故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事 項은 法律로 정한다.
<u>第 55 條</u>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獲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u>第 80 條</u>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獲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u>第 56 條</u>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 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 견을 표시할 수 있다.	<u>第 81 條</u>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 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 견을 표시할 수 있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第 57 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安定 또는 國民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長의 諮問 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後 그 事由를 明示하여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다만, 國會가 構成된 後 1年 以內에는 解散할 수 없다.</p> <p>②大統領은 같은 事由로 2次에 걸쳐 國會를 解散할 수 없다.</p> <p>③國會가 解散된 경우 國會議員 總選舉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內에 實施한다.</p>	(削除)
<p>第 58 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p>	<p>第 82 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도 또한 같다.	도 또한 같다.
<u>第 59 條</u>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u>第 83 條</u>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u>第 60 條</u>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u>第 84 條</u>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u>第 61 條</u>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u>第 85 條</u>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 2 節 行 政 府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u>第 62 條</u>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u>補佐</u> 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u>第 86 條</u>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u>補佐</u> 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p> <p>第 63 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p> <p>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p> <p>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p>	<p>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p> <p><u>第 87 條</u>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p> <p>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p> <p>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p>
<p>第 2 款 國務會議</p> <p>第 64 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p> <p>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以上 30人以上的</p>	<p>第 2 款 國務會議</p> <p><u>第 88 條</u>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p> <p>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以上 30人以下의</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u>第 65 條</u>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產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u>大統領의 非常措置 또는 戒嚴과 그 解除</u>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u>國會의 解散</u> 8. <u>國會의 臨時會·集會의 要求</u> 9. <u>榮典授與</u> 10. <u>赦免·減刑과 復權</u>	<u>第 89 條</u>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產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u>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u>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u>國會의 臨時會·集會의 要求</u> 8. <u>榮典授與</u> 9. <u>赦免·減刑과 復權</u>

現 行 憲 法	改 正 案
11.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2.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1. 政府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4.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樹立과 調整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樹立과 調整
15. 政黨解散의 提訴	14. 政黨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查	15.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查
17. 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檢察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u>法律에</u>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u>法律이</u>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 66 條 ①國政의 중요한 事項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政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政諮詢會議의 議長은 直前大	第 90 條 ①國政의 중요한 事項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詢會議의 議長은 直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p> <p>③國政諮詢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p> <p>③國家元老諮詢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u>第 67 條</u>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p> <p>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p> <p>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u>第 91 條</u>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p> <p>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p> <p>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u>第 68 條</u>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平和統一政策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p>	<p><u>第 92 條</u>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②平和統一政策諮詢會議의 組織 ·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新 設)</p>	<p>②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의 組織 ·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第 93 條 ①國民經濟의 發展을 위 한 重要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p> <p>②國民經濟諮詢會議의 組織 · 職 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 律로 정한다.</p>
<p>第 3 款 行政各部</p> <p>第 69 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 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第 70 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 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 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p>	<p>第 3 款 行政各部</p> <p>第 94 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 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 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第 95 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 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 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u>第 71 條</u> 行政各部의 設置·組 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 한다.	<u>第 96 條</u> 行政各部의 設置·組 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 한다.
第 4 款 監查院	第 4 款 監查院
<u>第 72 條</u>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u>法律에</u> 정한 團體의 會計檢查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u>監察을</u>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查院을 둔다.	<u>第 97 條</u>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u>法律이</u> 정한 團體의 會計檢查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u>監察을</u>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查院을 둔다.
<u>第 73 條</u> ①監查院은 院長을 포 함한 5人 以上 11人 以下 의 監查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 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 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u>第 98 條</u> ①監查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以上 11人 以下 의 監查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 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 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の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p> <p>④監查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p> <p><u>第 74 條</u> 監查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查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u>第 75 條</u> 監查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查委員의 資格·監查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③監查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p> <p><u>第 99 條</u> 監查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查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u>第 100 條</u> 監查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查委員의 資格·監查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 5 章 法 院	第 5 章 法 院
<u>第 102 條</u>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 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 한다.	<u>第 101 條</u>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 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 한다.
<u>第 103 條</u>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u>②大法院에 行政·租稅·勞動·</u> <u>軍事등을 專擔하는 部를 둘 수</u> <u>있다.</u> <u>③大法院에 大法院判事を 둔</u> <u>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u> <u>에 의하여 大法院判事が 아</u> <u>닌 法官을 둘 수 있다.</u> <u>④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u> <u>은 法律로 정한다.</u>	<u>第 102 條</u>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u>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u> 다만,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 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u>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u> <u>은 法律로 定한다.</u>
<u>第 104 條</u> 法官은 憲法과 法律 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u>第 103 條</u> 法官은 憲法과 法律 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獨立하여 審判한다.	獨立하여 審判한다.
<u>第 105 條</u>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 한다. ② <u>大法院判事는 大法院長의 提請에</u> 의하여 大統領이 任 命한다. ③ <u>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が 아닌</u> 法官은 大法院長이 任 命한다.	<u>第 104 條</u>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 한다. ② <u>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u>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 <u>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u>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u>第 106 條</u>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 <u>大法院判事의 任期는 5年</u> 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 다. ③ <u>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が 아닌</u> 法官의 任期는 10年 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 다.	<u>第 105 條</u>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 <u>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u>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 <u>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u>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u>第 107 條</u> ①法官은 彙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龍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u>第 106 條</u> ①法官은 彙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龍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u>第 108 條</u> ①法律이 憲法에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法律이 憲法에違反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u>第 107 條</u> ①法律이 憲法에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u>의하여 裁判한다.</u> ②命令·規則·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查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 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 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查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 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 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u>第 109 條</u>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u>第 108 條</u>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u>第 110 條</u>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u>第 109 條</u>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第 111 條</u> ①<u>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u></p> <p>②<u>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u></p> <p>③<u>軍法會議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u></p> <p>④<u>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u></p>	<p>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第 110 條</u> ①<u>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u></p> <p>②<u>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u></p> <p>③<u>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u></p> <p>④<u>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 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이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395

現 行 憲 法	改 正 案
第 6 章 憲法委員會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 112 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第 111 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 律의 違憲與否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 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彙劾	2. 彙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3. 政黨의 解散 審判
②憲法委員會는 9 人の 委員 으로 構成하며, 委員은 大統 領이 任命한다.	4. 國家機關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 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 에 관한 審判
③第 2 項의 委員중 3 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 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5. 法律이 정하는 憲法 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 을 가진 9 人の 裁判官으로 構成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 2 項의 裁判官중 3 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 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者를 任命한다.</p> <p>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者를 任命한다.</p> <p>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p>
<p>第 113 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 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p> <p>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p> <p>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役免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役免되지 아니한다.</p> <p>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p>	<p>第 112 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 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p> <p>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p> <p>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役免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役免되지 아니한다.</p>
<p>第 114 條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役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6 人 以上的 賛</p>	<p>第 113 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役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u>成이 있어야 한다.</u></p> <p>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u>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u></p> <p>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 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 할 수 있다.</p> <p>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기 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p>
<p>第 7 章 選舉管理</p> <p>第 115 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 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p> <p>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 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 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 長이 指名하는 3人の 委員 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 員중에서 互選한다.</p> <p>③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p> <p>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p>	<p>第 7 章 選舉管理</p> <p>第 114 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 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p> <p>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 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 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 長이 指名하는 3人の 委員 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 員중에서 互選한다.</p> <p>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p> <p>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⑤委員은 役勤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騁免되지 아니한다.	⑤委員은 役勤 또는 禁錮이 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騁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⑥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選舉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項은 法律로 정한다.	⑦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116 條 ①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作成등 選舉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	第 115 條 ①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作成 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 事務에 관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

現 行 憲 法	改 正 案
야 한다.	야 한다.
<u>第 117 條</u> ①選舉運動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u>第 116 條</u> ①選舉運動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u>第 8 章 地方自治</u>	<u>第 8 章 地方自治</u>
<u>第 118 條</u>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產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u>第 117 條</u>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產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u>第 119 條</u>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u>第 118 條</u>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 9 章 經 濟
<u>第 120 條</u>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 <u>②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實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發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안에서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u> <u>③獨寡占의 폐단은 적절히 規制·調整한다.</u>	<u>第 119 條</u>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 <u>②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u>
第 121 條 ①礦物 기타 중요한	第 120 條 ①礦物 기타 중요한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地下資源 · 水產資源 ·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 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 取 ·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 할 수 있다.</p> <p>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 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 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樹立한다.</p> <p><u>第 122 條 農地의 小作制度는</u>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農業生產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 用을 위한 賃貸借 및 委託 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p>	<p>地下資源 · 水產資源 ·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 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 取 ·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 할 수 있다.</p> <p>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 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 형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樹立한다.</p> <p><u>第 121 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u> 하여 耕者有田의 原則이 達 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禁 止된다.</p> <p><u>②農業生產性의 提高와 農地</u> 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하여 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發生 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 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u>第 123 條 國家는 農地와 山地</u> <u>기타 國土의 效率的이고 균</u> <u>형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u> <u>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u> <u>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u> <u>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u></p> <p><u>第 124 條 ①國家는 農民·漁民</u> <u>의 自助를 基盤으로 하는</u> <u>農漁村開發을 위하여 필요한</u> <u>計劃을樹立하며, 地域社會의</u> <u>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u> <u>②國家는 中小企業의 事業活</u> <u>動은 保護·育成하여야 한다.</u> <u>③國家는 農民·漁民과 中小</u> <u>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u> <u>야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u> <u>을 보장한다.</u></p>	<p><u>第 122 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u> <u>生產 및 生活의 基盤이 되</u> <u>는 國土의 效率的이고 均衡</u> <u>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u> <u>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u> <u>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u> <u>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u></p> <p><u>第 123 條 ①國家는 農業 및</u> <u>漁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하여</u> <u>農·漁村綜合開發과 그</u> <u>支援등 필요한 計劃을樹立·</u> <u>施行하여야 한다.</u> <u>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u> <u>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u> <u>育成할 義務를 진다.</u> <u>③國家는 中小企業을 保護·</u> <u>育成하여야 한다.</u> <u>④國家는 農水產物의 需給均</u> <u>衡과 流通構造의 改善에 努</u> <u>力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u> <u>로써 農·漁民의 利益을 保護한다.</u> <u>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u> <u>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u> <u>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u> <u>發展을 保障한다.</u></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u>第 125 條</u>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產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p>	<p><u>第 124 條</u>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產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p>
<p><u>第 126 條</u>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p>	<p><u>第 125 條</u>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p>
<p><u>第 127 條</u>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p>	<p><u>第 126 條</u>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p>
<p><u>第 128 條</u> ①國家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고 科學技術을暢達·振興하여야 한다.</p>	<p><u>第 127 條</u>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通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確立한다.</p>	<p>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確立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③大統領은 第 1 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 問機構를 둘 수 있다.</p>	<p>③大統領은 第 1 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 問機構를 둘 수 있다.</p>
第 10 章 憲法改正	第 10 章 憲法改正
<p><u>第 129 條</u> ①憲法改正은 <u>大統領</u> <u> 또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u> 發議로 提案된다.</p> <p>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提案 당시의 大 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 다.</p>	<p><u>第 128 條</u> ①憲法改正은 <u>國會在</u> <u>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u> 의 發議로 提案된다.</p> <p>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提案 당시의 大 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 다.</p>
<p><u>第 130 條</u>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 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p>	<p><u>第 129 條</u>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 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p>
<p><u>第 131 條</u> ①國會는 憲法改正案 이 公告된 날로부터 60 日 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 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 分</p>	<p><u>第 130 條</u> ①國會는 憲法改正案 이 公告된 날로부터 60 日 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 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 分</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의 2以上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p> <p>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불여 國會議員選舉權者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p> <p>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賛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p>	<p>의 2以上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p> <p>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以內에 國民投票에 불여 國會議員選舉權者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p> <p>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賛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附 則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2月25 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 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 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
第2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舉는 1981年6月30日까지 實施한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最 初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 施行日 40日前까지 實施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 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 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에 의 한 最初의 大統領이 選出됨과 동시에 終了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 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 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第4條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施行 당시의 統一主體 國民會議는 滅止되고 그 代議 員의 任期도 終了된다.	
第5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 行과 동시에 終了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舉된 最初的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 會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 始된다.	
第6條 ①國家保衛立法會議는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現 行 憲 法	改 正 案
集會日 前日까지 存續하며,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國會의 權限을 代行 한다. ②國家保衛立法會議는 各界의 代表者로 構成하되, 그 組織과 運營 기타 諸項은 法 律로 정한다. ③國家保衛立法會議가 制定한 法律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裁判 및 豫算 기타 處分등은 그 效力を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이유로 提訴하거나 異 議를 할 수 없다. ④國家保衛立法會議는 政治風土 의 刷新과 道義政治의 具現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日 以前의 政治的 또는 社會的 腐敗나 混亂에 현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政治活動을 規制하 는 法律을 制定할 수 있다. 第7條 新しい 政治秩序의 確立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 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 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 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 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 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 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 지 그 職務를 行하며, 이경 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 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 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 院長과 大法院判事が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 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 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施行 당시의 政黨은 당연히 解散된다. 다만, 늦어도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選舉日 3月 以前까지는 새로운 政黨의 設立이 보장된다.</p> <p>第8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選舉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과 大法院長·大法院判事·監查院長·監查委員·憲法委員會 委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p> <p>②이 憲法中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期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最初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p> <p>第9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p>	<p>③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期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p> <p>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を 持續한다.</p> <p>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p>

現 行 憲 法	改 正 案
<p>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 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を 持續한다.</p> <p>第10條 이 憲法에 의한 地方 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自立度를 감안하여 順次的으 로 構成하되, 그 構成時期는 法律로 정한다.</p>	